대외비

송○○ 판사 건의문 검토

2016. 2. 2. 기획조정실

1. 송○○ 판사 건의문 게시 경과

(사진)	송○○ (34기) 19○○. ○. ○○. ※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	1991 ○○ ○○고 졸업 2003 ○○대 ○○○과 졸업(○○학번) 2005 ○○○○지법 판사 2007 ○○○○지법 판사 2009 ○○지법 판사 2012 ○○지원 판사 2015 ○○○○지법 판사 2016. 2. 중견법관 해외연수 예정(○○○대학)

▣ 송○○ 판사의 특징

●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

-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 방식은 송○○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

▣ 1. 29.(금) 국제인권법연구회 '인사모' 토론회

● 발표: 송○○ 판사 "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"

● 참석: 사○○, 이○○, 정○○, 이○○ 부장판사, 김○○, 박○○, 홍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김○○, 이○○, 신○○, 진○○, 류○○, 홍○○ 판사

- [밑줄 표시] 우리법연구회 前, 現 회원(이하 같음)

▣ 건의문 게시 경과

● [2. 1. 13:40경] 위 발표문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자료실에 게시

- 2. 1. 자정 기준 댓글 3개 (이○○, 유○○ 부장판사, 박○○ 판사)

☞ 호응 크지 않음

- **[2. 1. 17:00경]** **"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"**을 위 발표문과 함께 자유게시판 중 **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 게시**

- 2. 1. 자정 기준 댓글 1개 (홍○○ 판사), 조회수 121 ☞ **호응 크지 않음**

▣ **건의문을 게시한 이유**

- 1. 29.(금) 인사모 토론회에서 **건의문 게시를 집단적으로 결의한 사실은 없음** ☞ 발제, 토론의 통상적인 세미나를 하고 해산
- **평소 사법행정, 판사회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던 송○○ 판사**가 **개인적으로 건의문을 게시**한 것으로 보임

2. 건의문의 내용 검토

☑ **건의문 내용 요약**

1 **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**

- 위원의 2/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함

2 **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**

3 **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**

-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,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 필요

가. 개별 검토

1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

▣ **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**

- ① 법원행정처가 심급·권역·직급별 대표성 반영하여 권역별로 배정 ☞ **② 권역별로 고등법원장이 위원 추천** ☞ ③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위촉
-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**'지원', '추천', '선출'** 등 다양한 구성방식을 적절하게 혼합

- 오피니언 리더, 사법행정 관심 법관 포함

▣ **검토의견**

- 논란 가능성이 높은 예민한 문제
- 건의사항(과반수 이상 판사회의 선출방식) VS 법원행정처 안(권역별 고등법원장 추천방식)

2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

▣ **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**

- 상임위원회 모델만 도입 ☞ 연방사법회의 모델 도입은 시기상조

- [논거] 전체회의의 의결기구화 우려 존재, 전국법원장회의와의 관계 모호

-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만 도입하고, 연방사법회의 모델 도입 여부는 향후 상임위원회 모델의 성과 분석 후 정책 결정
- 단, 각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은 모두 모여서 함께하고, 보고안건의 경우 위원회 통합 보고 실시 ☞ **보고안건의 경우 '전체회의' 구성한 것과 유사한 효과 (단, 심의, 의결은 불가)**

▣ **검토의견**

- 송○○ 판사의 이 부분 건의 사항은 **채택 불가**
- 다만, **상임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**하고, **보고안건에 대한 전체 위원회 통합보고를 실시**하므로, 비록 전체회의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줄 수는 있음

3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논의

▣ **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**

- 자유롭고 심도 있는 논의 촉진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
-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가능

▣ **검토의견**

● 사법행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함

- 다만,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음

● 송○○ 판사의 이 부분 건의사항은 확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

- 송판사는 '판사회의'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보임

나. 총평

▣ **송○○ 판사의 건의문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임**

● **이미 TF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**임

● 법원행정처 확정안과 크게 다르지도 않음

● 다만, **송○○ 판사의 주된 관심**은 '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'보다는 **'판사회의의 활성화'**에 있음 ☞ 사법행정위원회를 **판사회의 활성화의 수단**으로 삼는 것임

> ☑ **송○○ 판사의 주된 관심**
>
> ▶**[목적]** "대법원장,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" ⇨ **"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"**으로 전환
>
> ▶**[수단]** ① 각급 법원에서의 판사회의 활성화, ② 미국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한 전국 단위의 전체판사회의 결성 및 활성화

▣ **건의문은 판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**

● **판사회의 활성화 주장**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 ⇨ **진부함**

● 게시일 자정 기준 조회수 121회, 댓글 1개에 불과

●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

▣ **다만, 송판사가 인사모에서 발제한 발표문은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**

담고 있음

● 송○○ 판사의 주장

- **[헌법 정신]**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**'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'**을 규정 ⇨ **수직적 사법행정체계**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

- **[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]**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**수직적, 관료적 사법행정체계**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**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** ⇨ 단, 현실적으로 개정은 쉽지 않음

- **[무엇을 할 것인가?]**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사회의의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를 통하여 수직적,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,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⇨ **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** <끝>